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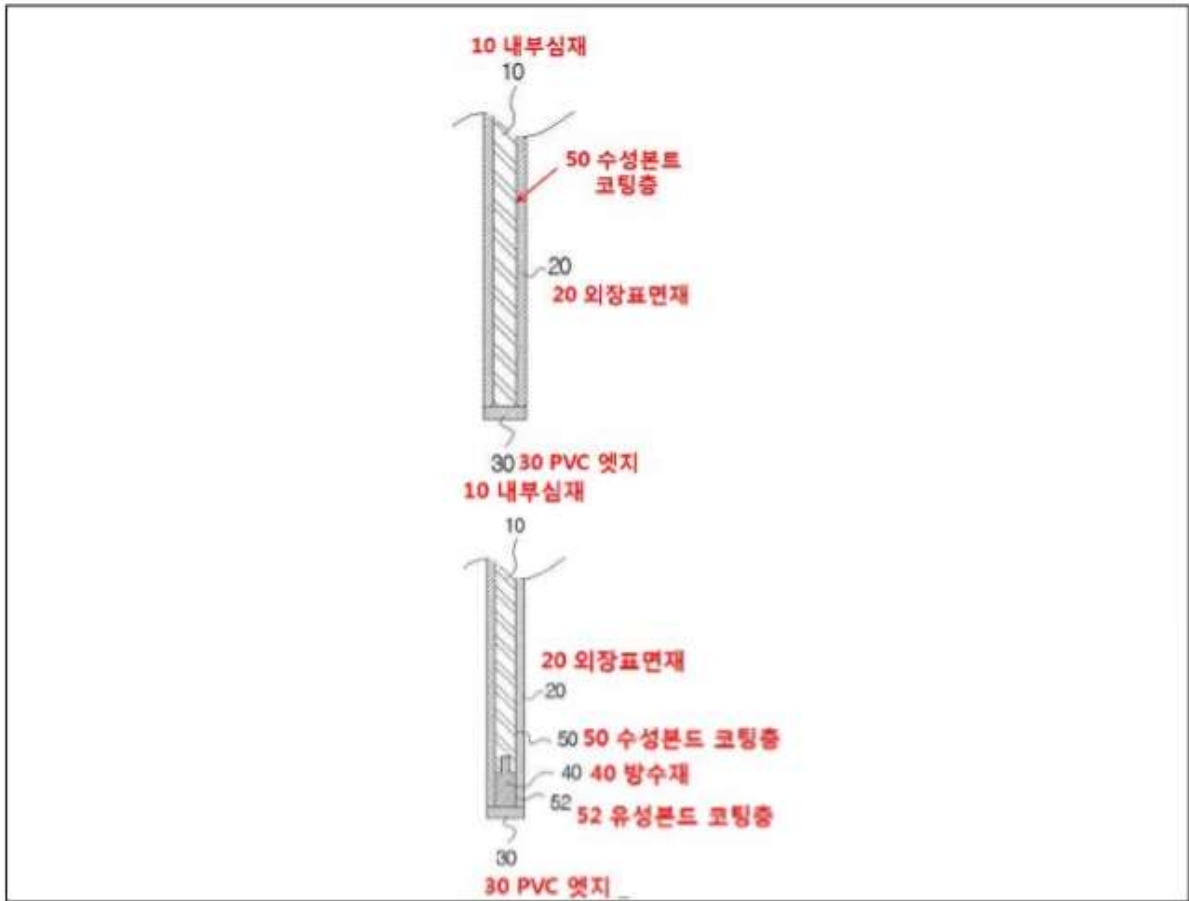
[특허분쟁]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필수적이지 않은 요소 생략한 실시 제품 - 균등침해

불인정 + 간접침해 불인정: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허6736 판결



## 1. 특허발명

【청구항 1】 화장실 칸막이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좌쪽단에 부착된 화장실문짝(100), 우측단에 부착된 화장실문짝(102), 중판과 중판 사이에 설치되는 화장실문짝(104), 좌측벽에 설치되는 좌쪽단(110), 우측벽에 설치되는 우측단(112), 화장실문짝과 문짝 사이에 설치되는 중판(114), 좌측벽에 설치되는 좌측판(120), 우측벽에 설치되는 우측판(122), 좌측판(120)과 우측판(122) 중간에 설치되는 중간측판(124)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장실 칸막이 판재에 있어서(이하 '전체부 구성'이라 한다), 상기 화장실 칸막이 판재는 내부심재(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내부심재(10)의 하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합성수지, 합성수지 함침 강화판, 알루미늄, 스테레스스틸, 철재 및 세라믹 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의 재질로 이루어진 방수재(4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내부심재(10)의 전후 좌우 표면에 코팅된 수성본드 코팅층(50); 상기 방수재(40)의 전후 좌우 표면에 코팅된 유성본드 코팅층(52)(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코팅층의 전후 좌우 표면에 부착된 외장표면재(20)(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방수재(40)의 하부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PVC 엷지(30)로 구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방수용 화장실 칸막이 판재(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2. 특허발명과 실시기술의 구성요소 대비

1	화장실 칸막이 판재의 내부심재(10)	화장실 칸막이 판재의 파티클 보드(10)
2	내부심재(10)의 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방수재(40), 위 방수재(40)는 합성수지, 합성수지 함침 강화판, 알루미늄, 스텐레스스틸, 철재 및 세라믹 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의 재질로 이루어짐	파티클 보드(10)의 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방수재(30), 위 방수재(30)의 재질로는 폴리에스테르 패널이나 발포 고무 등 방수기능을 갖는 다양한 재질을 적용할 수 있음
3	내부심재(10)의 전후 좌우 표면에 코팅된 수성본드 코팅층(50); 방수재(40)의 전후 좌우 표면에 코팅된 유성본드 코팅층(52)	파티클 보드(10)의 전후 좌우 표면에 코팅된 수성본드층(40), 방수재(30)의 전후 좌우 표면에 코팅된 유성본드층(50)
4	코팅층의 전후 좌우 표면에 부착된 외장표면재(20)	본드층의 전후 좌우 표면에 부착된 멜라민 필름(20)
5	방수재(40)의 하부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PVC 엣지(30)	<대응 구성요소 없음>

### 3. 특허법원 판결요지

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균등한 구성요소를 갖는다고 하기 위하여는 1항 발명에 대응되는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확인대상발명에는 1항 발명의 구성요소 5인 PVC 옛지에 대응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어 확인대상발명이 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방수재 저면이 1항 발명의 PVC 옛지에 대응되는 구성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확인대상발명의 방수재 저면은 1항 발명의 방수재 저면과 동일한 구성일 뿐이고, 1항 발명의 PVC 옛지에 대응되는 구성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은 1항 발명의 물건에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1항 발명에 대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증거들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에 의한 화장실 칸막이 판재가 부품으로 사용되어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장실 칸막이 판재의 방수재 하부 표면에 PVC 옛지가 부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웹사이트에는 방수재 하부 표면에 PVC 옛지가 부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하부 방수용 화장실 칸막이 판재가 시공된 도면 내지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이 1항 발명의 물건의 생산에 사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이 1항 발명의 물건의 생산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①원고는 단순히 경험칙상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은 화장실 이외의 물기가 없는 환경의 칸막이로 사용될 수 없고, 조립식 화장실에 있어서 모든 칸막이 판재의 하단부에는 PVC 엷지와 같은 마감재가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오히려 확인대상발명의 화장실 칸막이 판재는 화장실 시공에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도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방수재 하부 표면에 PVC 엷지가 부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하부 방수용 화장실 칸막이 판재를 소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방수재 하부 표면에 PVC 엷지가 부착되지 않은 확인대상발명의 화장실 칸막이 판재는 그 물건 자체로 독자적인 용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임로,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1항 발명의 화장실 칸막이 판재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한다거나 단순히 위 특허 물건 이외의 물건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이 1항 발명의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허6736 판결

변리사23년/변호사 15년, 특허심판소송, 민형사, 손해배상, One-Stop Service

---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